

의 수용기간을 최대 3년으로 제한하고 있음.

반면, 사회보호법은 '피치료감호자가 감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어 사회보호위원회의 치료감호의 종료결정이나 가종료 결정을 받을 때까지'로 규정하여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외국 입법례도 정신장애자의 경우는 부정기적으로 규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¹³⁾

치료보호의 치료적 측면을 고려한다면 기간을 정하고 처우를 한다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치료보호는 일반 병원의 치료와는 구별되는 것으로서 피치료보호자의 자유박탈을 가져오는 강력한 조치이므로 수용기간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는 것은 일종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안 제23조와 같이 기간연장을 허용하지 아니하고 3년으로 수용기간을 제한하는 것은, 공주치료감호소에서 3년 이상 수용되고 인원이 약 40%에 이르고 있는 점, 최근 5년간의 치료감호소 퇴소자중 29.4%가 3년 이상 수용되었다는 점 등을 비추어 보더라도 치유가 가능한 충분한 기간이라고 보기는 어려움.

13) 독일, 미국, 일본, 덴마크, 스웨덴 등은 정신장애자에 대한 수용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영국은 원칙적으로 1년으로 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나아가 알코올·약물중독자에 대하여는 독일, 스위스, 스웨덴은 2년, 일본은 1년·2회 연장 가능하도록 하고 있음.

- 22 -

은 정신질환자와 달리 일정 기간의 치료만으로 완치가 가능하기 때문임.

안 제23조는 치료보호의 기간을 그 대상자의 특성을 고려함이 없이 치료보호가 비자발적 구금이라는 성격을 강조하여 수용기간을 단기간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정신질환자와 알코올·약물중독자의 실제 치료기간 등을 기준으로 질환별로 수용기간을 달리 규정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겠음.

아. 치료보호의 집행에 관한 문제

안 제31조 및 제33조는 법원에게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에 관한 심사·결정권과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경우의 보호관찰 기간에 관한 결정권을 부여함으로써 사회보호법¹⁵⁾과 달리 치료보호의 집행에 있어서 법원에게 일정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그리고 각 고등검찰청에 설치되는 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위탁,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후의 치료보호 종료에 관한 심사·결정권,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의 취소권, 보호관찰에 대한 감독 및 보호관찰기간 만료 전의 보호관찰 종료에 관한 권한을 행사하도록

15) 사회보호법은 치료감호의 종료·가종료, 치료위탁, 가종료 취소 등 치료감호의 집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법무부의 사회보호위원회에서 심사·결정함.

따라서 치료개선에 필요한 기간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용기간을 규율하는 방법을 검토하여야 할 것임.

수용중인 피치료감호자의 수용기간별 현황

(2004. 8. 31. 기준)

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632명 (100%)	215 (34.0)	137 (21.7)	78 (12.3)	66 (10.5)	50 (7.9)	67 (10.6)	19 (3.0)

최근 5년간(1999~2003) 치료감호소 퇴소자 현황

계	1년미만	1년이상 2년미만	2년이상 3년미만	3년이상 4년미만	4년이상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이상
1,389명 (100%)	366 (26.4)	409 (29.4)	206 (14.8)	104 (7.5)	94 (6.8)	145 (10.4)	65 (4.7)

(평균수용기간: 3년 1월)

한편, 치료보호의 전문성 및 교정·개선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치료보호대상자를 구분하고 수용시설·수용기간 및 치료방법 등을 다르게 취급하는 외국 입법례가 있음.

독일의 경우 법원의 판결부터 약물중독자 등에 대한 '금단시설 수용'과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신병원수용'을 구별하고, 금단시설 수용기간은 2년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¹⁴⁾ 약물중독사범

14) 자유형과 금단시설수용처분이 병파된 경우에는 수용기간의 형기산입을 조건으로 수용기간의 상한은 자유형의 형기만큼 연장할 수 있음.

- 23 -

하고 있음(안 제37조).

현행 형사관련 집행업무와 관련하여, 형의 집행은 원칙적으로 재판법원에 대응한 검찰청의 검사가 지휘하고(형사소송법 제460조),¹⁶⁾ 가석방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가석방심사위원회의 심사와 법무부장관의 허가로 이루어지며(형형법 제51조 및 제52조),¹⁷⁾ 보호관찰에 관한 사항은 법무부장관 소속의 보호관찰심사위원회에서 심사·결정(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5조)하는 등 재판집행 업무를 검사주의¹⁸⁾에 입각하여 법무부와 검찰에서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두고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법안이 그 집행과 관련하여 법원에게 중요한 종료, 가종료 등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에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문제이므로 치료보호의 집행절차 전반에 대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16) 재판의 집행은 그 재판을 한 법원에 대응한 검찰청검사가 지휘한다. 다만, 재판의 성질상 법원 또는 법원이 지휘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형사소송법 제460조제1항). 재판장, 수명법원, 수탁판사의 구속영장의 집행과 재판장의 압수·수색영장 지휘(형사소송법 제81조, 제115조)

17) 가석방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 소속하에 가석방심사위원회를 두고, 동 심사위원회가 가석방적격결정을 할 때에는 5일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가석방허가를 신청하여야 하며, 법무부장관은 동 심사위원회의 가석방신청이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허가할 수 있음(형형법 제49조, 제51조, 제52조)

18) 재판의 집행에 관하여 법원이 집행지휘를 하는 법원주의와 검사가 하는 검사주의가 있음. 영미에서는 법원주의 입장임. 독일의 경우, 법원에서 보안처분 집행관련 업무를 심사하나, 독일은 사실심 법원 외에 가석방 등 형집행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집행법원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음.

일부에서는 법무·검찰행정영역에서 가석방, 가종료 등을 통하여 실질적으로 법원의 재판을 변경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도 있으나,

행형성적이나 치료의 경과, 보안처분의 준수실적 등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가석방, 가종료 등이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실제 집행기관이 이를 심사·결정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함.

한편, 치료보호법안은 치료보호 집행권한을 법원과 사회보호위원회에 분산하고 있어 업무집행에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치료보호의 가종료의 경우를 예로 들자면, 법원이 사회보호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가종료 결정과 보호관찰 기간을 설정하고, 그 후에는 사회보호위원회가 보호관찰을 감독하면서 가종료 취소, 보호관찰의 조기종료 내지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하게 됨.

또한 '법원'이 치료보호를 선고한 법원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모든 법원이 치료보호의 집행에 관한 일부 권한을 부여받게 되고, 각 고등검찰청에 대응하여 5개의 사회보호위원회가 설치된다면 5

개의 사회보호위원회가 설치되어야 하므로, 여러 법원과 사회보호위원회 사이에 업무의 통일성을 기하기 어려워 결정내용에 대하여 형평성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에 관한 집행권한을 뚜렷한 기준없이 법원과 사회보호위원회에 분산하기보다는 치료보호의 집행업무의 일관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법원이나 사회보호위원회 중 일방에 권한을 집중하고 관여기관의 숫자도 최소화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겠음.

자. 잔여형기의 집행문제(안 제28조)

안 제28조 후단에서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는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을 먼저 하고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을 형기에 산입하는 대체주의(代替主義) 입장을 취하면서 사회보호법과 달리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잔여 형기의 집행유예나 집행면제에 관한 결정권이 법원에 있는지에 대한 명시적 규정은 없으나, 치료보호법안이 치료보호의 집행단계에 법원의 개입을 인정하고 있는 취지상, 집행유예나 집행면제에 대한 결정권은 법원에 있는 것으로 해석됨.

일반적으로 형사재판에서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일사부재리(一事不再理)의 효력에 의하여 동일사건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는 것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통상의 불복방법으로는 다툴 수 없으며, 법원 스스로도 재판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없음.

또한 형의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등으로 요건을 법정하고 있고(형법 제62조), 형의 면제는 절도죄 등의 친족간의 범죄로 한정하여 열거(형법 제328조, 제344조)하고 있음.

따라서 치료보호의 잔여 형기를 집행유예하거나 면제하는 제도는 현행의 형사사법체계와 구별되는 예외적인 것으로서 그 도입에 신중할 필요가 있음.

나아가, 형법과 형사소송법의 관련규정과의 차이점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잔여 형기에 대한 집행유예 및 집행면제의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임.

이상 검토보고를 마침.

상자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한 것임.

주요내용

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제2호).

나.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보호 대상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제2호).

다.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 외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를 분리 수용하도록 함(안 제6조).

라.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함(안 제8조).

마. 치료보호영장의 요건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해서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바.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함(안 제18조).

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20조).

아.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인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피치료보호청 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담당 생 활교사 또는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음(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자. 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음(안 제22조).

차.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23조 제2항)

카.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함.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8조).

타. 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를 심문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 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1조제1항).

파. 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32조).

하.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치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자 3인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7조제1항 및 제2항).

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함(안 제41조제1항).

너.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법무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

법률 제 호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우를 위해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개선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2. “치료보호대상자”라 함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법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로서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

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치료보호사건”이라 함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4. “지정치료보호시설(指定治療保護施設)”이라 함은 피치료보호청구인 및 피치료보호자를 수용하여 치료·관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 ①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치료보호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은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가 청구된 치료보호대상자(이하 “피치료보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4조(이송) ①법원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치료보호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의 병합) 법원은 동일한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개의 치료보호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용)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 외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는 병동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장 치료보호사건의 절차 등

제7조(치료보호) 법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①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는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 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을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제10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를 보호 구속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보호영장) ①검사는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정한 증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 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 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할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 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속 등) ①치료보호영장이 발부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즉시 관할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보호 구속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의한 보호구속은 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이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1항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 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보호구속”으로 각각 본다.

제12조(치료보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13조(치료보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등)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보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보호영장으로 보면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한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즉각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피치료보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로 심리기일에 출석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 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공판절차로의 이행) ①법원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 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신장애가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치료보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보

고, 치료보호영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의 피고인이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피고인의 이송을 법원사무관에게 명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치료보호와 형을 병과하는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 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치료보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보호사건의 판결은 형사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 각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

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전문가의 감정 등) ① 법원은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관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病狀)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고 등) ① 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판결의 효력)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인) ①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인(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치료보호청구 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담당 생활교사 또는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인의 권리) ①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다.
②보조인은 제30조 제1항의 가종료 등의 심사·결정상의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심문서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위하여 진술할 수 있다.

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

제23조(치료보호의 내용) ①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의료

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 운영, 치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의 사퇴) ①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정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27조(집행지휘)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8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30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1조(가종료등의 심사·결정) ①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은 제6장의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

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를 심문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마다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32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 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치료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부담한다. 다만, 당해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법정대리인 등이 국가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보조신청과 심사는 심의위

원회가 담당하고 그 절차, 심사의 기준 및 경비보조내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3조(보호관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시 법원에서 결정한다.

③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④ 피보호관찰자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제34조(치료보호의 집행면제 등) ①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보호관찰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5조(가종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수 있다.

1. 제33조제3항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이 개시된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제37조(치료보호심의위원회) ①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치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갖춘 자 3인으로 구성하고, 각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심의위원회는 제31조제1항의 종료 또는 가종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⑤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결정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 및 그 취소와 가종료의 취소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보호관찰의 종료, 준수사항의 부과 및 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3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위탁경비보조신청에 관한 심사 및 결정

⑥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9조(심의위원의 해촉) ①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40조(심의) ①심의위원회는 심의자료에 의하여 제37조제4항 및 제5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의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환경조사
2.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 자료의 제출요구

④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1조(의결 및 결정) ①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치료보호자의 담당 의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치료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그리고 치료보호종

료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42조(심의위원의 기피)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심의위원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3조(피치료보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보호자와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유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피치료보호자의 수용 및 감독

제44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의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피치료보

호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5조(행동제한 등)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판결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치료보호자의 전화통화 및 서신수발, 보호자 및 보조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없으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46조(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보호자, 그의 법정대리인 등은 대통령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제47조(운영실태 등 점검 및 개선명령) 법무부장관은 매 3월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8조(개선명령) 법무부장관은 제4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검토 및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9조(치료보호청구의 시효) ①치료보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결정의 확정이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50조(치료보호의 시효) ①피치료보호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각종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51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2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별칙

제53조(도주 등) 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54조(허위진단서작성 등)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

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족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보호감호처분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보호감호처분을 받은 자 중 그 집행 중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과 동시에 그 집행을 종료한다.

제4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5조(치료감호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 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6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광주민주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중 제6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형법 제250조 내지 제25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87조 내지 제289조·제292조(제287조 내지 제289조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제293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297조 내지 제303조·제305조의 죄, 제333조 내지 제336조의 죄 또는 그 미수죄, 제337조 내지 제339조의 죄 또는 제337조 전단·제338조 전단·제339조의 미수죄, 제351조(제347조, 제348조의 상습범에 한한다)의 죄 또는 그 미수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3조제3항·제6조(제2조제1항과 제3조제3항의 미수범에 한한다)의 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2·제5조의4·제5조의5의 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를 범하여 금고 1년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자

②국민연금법중 제77조의2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 중인 경우

③뉴스통신진흥에관한법률중 제9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5.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관한법률에 의

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④방송법중 제13조제3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6.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 관한법률에 의
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⑤보안관찰법중 제2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보안관찰처분의 집행중지결정이 있거나 징역·금고·구류·노
역장유치 중에 있는 때에는 보안관찰처분의 기간은 그 진행이 정
지된다.

⑥사법경찰관리의직무를행할자와그직무범위에관한법률중 제3조제3
항을 삭제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제17조를 삭제한다.

⑧정기간행물등에관한법률중 제9조제1항제4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4. 보안관찰법에 의한 보안관찰처분이나 치료보호에 관한법률에 의
한 치료보호 처분의 집행 중에 있는 자

⑨교정시설경비교도대설치법중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설치 및 임무) 구치소 및 교도소(이하 "교정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경비임무와 무장공비등의 침투거부등 작전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소속하에 교정시설경비교도대(이하 "경비교도대
"라 한다)를 둔다

⑩국가인권위원회법중 제2조제2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가.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 지정치료보호시설,
소년원 및 소년분류심사원

⑪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중 제15조제2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3. 업무의 성질상 수사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
처분·보호관찰처분·치료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
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 관장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차수된 사항

⑫범죄피해구조법중 제8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③국가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함에 있어
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가해자인 수형자의 작업상여
금 또는 근로보상금으로부터 그 배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⑬부패방지법중 제21조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 수사·재판 및 형집행(보안처분·보안관찰처분·보호처분·보
호관찰처분·치료보호처분·사회봉사명령을 포함한다)의 당부에
관한 사항 또는 감사원의 감사가 차수된 사항

⑭출입국관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지정치료보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외국인이 형의 집
행을 받고 형기의 만료, 형의 집행정지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석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 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2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법률과 정신보건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3조(벌칙) ①제3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 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자가 피치료보호자를 도주하게 하거나 이를 용이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치료감호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예산명세서

1. 총 소요예산 : 156억원(추정)

- 가. 위원회 설치·운영비(안 제37조 등) : 48억원
- 나. 치료위탁비용(안 제32조제3항 등) : 108억원

2. 산출근거

* 향후 5년간 활동경비 소요(추정)

가. 위원회 설치·운영비(안 제37조 등)

○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비용 : 25억원

- 기관 설치·운영비(임대료, 운영비 등) : 25억원(5억원×5년)

○ 인건비 : 23억원

- 비상근위원 9인 : 1억 5천만원 (1인당 수당 5만원×9인×12개월
×5년×5개고검)

- 사무처 3인 : 법무부 보호직공무원 21억 2,500만원(1년 8,500만
원×5년×5개고검)

나. 치료위탁비용 : 108억원

○ 총 의료관련비용 : 약 108억원

- 의료인력 인건비 : 약 101억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원 인건비 포함)

- 기타 의료관련비용 : 약 7억원

(약품·재료비 5억6천만원, 진료비 5천만원, 의료장비구입 약 1
억원)

- 다.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 외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를 분리수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검정이 있어야 함(안 제8조).
- 마. 치료보호 영장의 요건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해서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함(안 제18조).
- 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법적 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20조).

- 아.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
매 및 변호인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
하였던 경우에 담당 생활교사 또는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
조인이 될 수 있음(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자. 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
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음(안 제22조).
- 차. 치료보호시설에 의 수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23조 제2항).

‘치료보호에관한법률’안’ 검토 의견

2004. 10. 법무부

□ 법률 개요

1. 제안 이유

-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인권침해 논란 있음,
○ 사회보호법 자체도 1980년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
절차상 정당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전파자의 격리·
사회방위를 우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하여 규정이 삭제된 치료감호자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한 것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 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
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 제2호).
- 나.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보
호대상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2호).

- 카.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함.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8조).
- 타. 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를 심문하여 그 집행 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1조 제1항).
- 파. 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32조).
- 하.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치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갖춘 3인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 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함(안 제41조 제1항)
- 너.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법무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

□ 검토 의견

1. 법률의 명칭

○ 법률안

제명을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수용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 심의기구를 “치료보호심의위원회”로 규정함

○ 의견

“치료보호”라는 용어 사용 재검토 필요

○ 이유

-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에서 마약류중독자에 대한 보호처분을 “치료보호”라고 규정하면서 “치료보호기관”, “치료보호심사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어 용어 중복 사용에 따른 일반 국민들의 혼동이 우려됨
- 현행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 용어를 변경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보여지며, 굳이 변경한다면 “치료보호”가 아닌 다른 용어를 선택함이 상당함

2. 치료보호대상자의 범위(안 제2조 제2호)

가. 약물중독 사범의 제외

○ 법률안

제1조(목적)와 제2조 제2호(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의)는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만을 치료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현행 사회보호법상 치료감호대상인 마약 또는 알코올 중독사범은 대상에서 제외

- 4 -

○ 의견

약물중독 사범을 대상으로 규정함이 상당

○ 이유

- 약물에 대한 습벽이 있거나 중독된 자에 의한 범죄 발생 가능성은 일반인보다 매우 높으며, 자기 통제 능력이 상실된 약물중독 상태에서의 범행은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한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 그 위험성이 클 뿐만 아니라 약물중독은 형사처벌 보다는 치료적 처우가 필요하므로 약물중독범죄자도 보안처분의 대상으로 규율하여야 함
※ 약물중독사범에 대해서는 형사처벌보다는 치료적 처우를 확장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

- 독일을 비롯하여 보안처분 제도를 채택하는 대부분 국가에서도 약물중독범을 보안처분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음
- 약물중독범을 제외한 이유가 마약사범의 경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치료보호로 규율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 기인한 것으로 보이나, 동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받게 되는 마약사범은 초범 또는 극히 사안이 경미한 경우이고, 그나마 동제도가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약물사범 중 약물에 대한 의존 정도가 심한 경우는 보안처분 대상으로 규정하여야 함

나.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로 제한

○ 법률안

제2조 제2호(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정의)에서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한 자”로 대상을 제한

○ 의견

대상범죄가 지나치게 축소되어 재검토 필요

○ 이유

- 보안처분 대상범죄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제도 남용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는 점은 일종 수긍하나,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로 제한할 경우 위험성이 큰 상당수 범죄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점 발생
- 절도, 강요, 권리행사방해, 주거침입, 명예훼손, 업무방해, 폭행, 체포·감금, 협박, 공무집행방해 등이 대상에서 제외되고, 심지어 미성년자 등에 대한 간음(형법 제302조, 징역 5년 이하),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징역 5년 이하), 존속 폭행(형법 제260조 제2항, 징역 5년 이하) 등도 대상이 되지 못함
- 범죄유형과 관계없이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경우를 모두 치료감호대상이 되도록 규정한 현행 사회보호법 체제하에서도, 실제 치료감호대상이 된 범죄는 살인, 폭력, 강도, 강간, 절도 등이 대부분으로 남용 사례가 없을 뿐만 아니라 법원의 사법적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남용될 우려도 없으므로 법률안과 같이 대상범죄를 극도로 축소할 필요는 없음

※ 법안대로 할 경우, 심신상실자가 치료보호요건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범죄를 범하였을 때 형사처벌도 치료보호도 불가능하여 그가 심신상실 상태에서 또 다른 위험한 범행으로 나가는 것을 방지 할 수 있는 대책이 전혀 없어 사법의 사각지대가 발생함

3. 치료보호의 요건(안 제8조 제3항)

○ 법률안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할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직권으로 그 사건을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의견

검사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에 정면으로 배치되므로 삭제함이 상당

○ 이유

- 현행 사회보호법은 법원이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중 치료감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에게 치료감호청구를 요구하는 경우(제14조 제5항)에 치료감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률안처럼 검사의 청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법원이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변경하여 심리하고 치료보호처분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형사소송법의 기소독점주의, 불고불리의 원칙을 무시한 것으로 우리나라 현행 형사법 체제와 전혀 맞지 아니함

4. 치료보호의 기간 및 형벌과의 관계(안 제23조 제2항)

○ 법률안

법률안 제 23조 제2항은 치료보호시설에의 최대 수용기간을 3년으로 한정

- 7 -

○ 의견

현행 치료감호와 같이 부정기로 규정하거나, 최대 수용기간을 10년으로 한정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

○ 이유

- 정신분열, 조울증, 망상장애 등 고질적 정신병으로 인하여 범죄에 이른 대상자들을 일률적으로 3년 내에 재범 위험성이 제거될 수 있을 정도로 치료할 수 있다는 것은 지나치게 낙관적인 예측임
- 정신질환은 발달된 현대 의학에서도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 있는 부분이 가장 많아 그 치료기간을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독일, 스위스, 오스트리아, 덴마크, 스웨덴, 벨기에, 핀란드, 이태리 등 보안처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대다수 입법례에서도 치료처분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는바, 이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보안처분의 본질상 당연하다고 볼 수 있음
- 따라서 현행 사회보호법처럼 기간의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타당하고, 굳이 기간을 제한한다면 최소한 10년 정도의 장기로 규정하되 연장이 가능하도록 함이 상당함
- 다만, 약물중독사범의 경우는 정신장애의 경우와 달리 치료기간이 단기간일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독일의 경우처럼 2년으로 제한하는 방안 검토 가능 (법률안은 약물중독사범을 치료보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이유로 대상으로 포함함이 상당)

- 8 -

5. 치료보호처분과 형벌과의 관계(안 제28조)

○ 법률안

법률안 제28조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파되는 경우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하고,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되어 잔여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함

○ 의견

잔형기는 집행하는 것이 책임원칙 및 권리분립원칙에도 부합

○ 이유

- 법원이 판결 선고시 병파형 부과 여부에 대하여 충분히 심리한 결과, 치료가 종료된 경우에도 형을 복역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병파형을 선고한 이상 잔형기는 집행하는 것이 책임원칙 및 법감정에도 부합
- 확정된 판결을 사정변경을 이유로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하는 것은 판결의 효력을 무효화시키는 것으로 권리분립의 원칙에도 어긋남
- 한편, 법안에서는 “잔여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을뿐 그 결정주체나 형식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그 자체로도 문제점 있음

- 법률안 제2조제4호 및 제24조 내지 제26조에서는 법무부장관이 국공립의료시설 및 정신보건법 제10조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을 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수용, 치료·관리하는 시설로 운영하도록 규정

- 법률안 제6장(제37조 내지 43조)은 각 고등검찰청에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위촉한 판사·검사·변호사 자격자 3인, 정신과 전문의 자격자 3인, 사회복지사 자격자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도록 규정

○ 의견

- 별도의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운영할 필요 없이, 현행 공주치료감호소를 치료보호시설로 운영하는 것이 상당함
※ 굳이 지역별로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운영한다면, 보건복지부 및 국공립의료시설 등과 충분한 사전 협의를 거쳐 시설과 인력을 정비하기 위한 경과 기간을 두는 것이 바람직

- 지역별 치료보호심의위원회 대신, 현행처럼 법무부 산하에 단일의 위원회를 구성·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이유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및 정신보건법상의 정신요양시설은 범죄자가 아닌 일반 정신질환자를 치료, 요양시키는 시설인 반면 피치료보호자들은 살인, 강간, 폭력, 방화 등 중범죄를 저지른 위험한 자들로서 단순한 치료의 대상이 아니라 감시와 계호를 함께 해야 할 대상임

- 따라서, 이들을 수용하는 시설은 정신병원과 수용시설의

6. 지정치료보호시설(안 제2조제4호, 제24조 내지 제26조) 및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운영(안 제6장)

○ 법률안

- 9 -

- 10 -

- 기능을 함께 갖추어야 하고, 이들을 관리하는 인력은 의료진과 수용관리자로서의 역할을 아울러 수행하여야 함
- 일반 병원에 위험한 정신질환 중범죄자들을 일반 환자와 함께 수용할 경우 혹시 발생할지도 모를 범죄의 위험성 때문에 일반 환자와 그 보호자들은 물론 의료진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므로, 결국 피치료보호자들을 국공립병원 또는 요양시설에 수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특수병동을 설치하거나 치료 및 관리 전담요원을 배치하여야 함
- 그러기 위해서는 국공립병원과 요양시설 및 이들을 관리하는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의를 거치고, 시설과 인력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하는 등 사전에 많은 준비절차가 필요함
- 반면, 공주치료감호소는 수용인원 1,000명 규모의 시설과 전문 의료진 및 감호전담 인력을 갖추고 있고, 2004. 9. 현재 700명内外의 피치료보호자들을 수용, 치료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과 인력을 구비하기 위해 예산을 낭비할 것 없이 치료보호대상자들은 모두 공주치료감호소에 수용, 치료하는 것이 타당함
- 수용시설을 공주치료감호소로 단일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심의기구도 법무부에 1개를 설치하는 것이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심의업무를 수행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각 지역별로 심의기구를 운영하는데 소요될 인력과 예산을 절감 할 수 있음

- 11 -

8. 고소취소된 친고죄,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에 대한 독립감호청구규정 등(사회보호법 제15조 제2,3호) 삭제

○ 법률안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는 고소취소된 친고죄,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동조 제2호)와 피의자가 기소유예처분 받은 경우(동조 제3호)에도 공소제기 없이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법률안 제12조는 위 두 경우를 독립감호청구대상에서 제외함

○ 의견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 제2,3호 경우도 독립하여 감호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이유

- 고소취소된 친고죄와 처벌불원하는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독립감호청구를 인정하면 책임무능력자가 한정책임능력자나 책임능력자보다 불리하게 된다는 비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지나, 보안처분의 본질이 범죄자의 장래 위험성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므로 소추조건을 결하였다고 하여 보안처분을 부과할 수 없는 것은 아님(책임조건을 결한 경우에도 위험성 때문에 치료감호를 부과하는 것과 같음)
- 피의자의 정신상태 등을 감안하여 본안은 기소유예처분하면서 감호청구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피의자에게 유리하고, 기소유예처분하면서 재범의 위험성 때문에 감호청구만을 하여야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으므로 현행 사회보호법 제15조 제3호를 삭제한 것은 부당함

- 13 -

7. 가종료 등의 심사·결정(안 제31조)

○ 법률안

법률안 제31조에서 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치료보호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종료 여부만을 심사·결정하도록 규정

○ 의견

종료·가종료 등 치료보호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모든 심사·결정은 치료보호심의위원회에서 담당하도록 하여야 함

○ 이유

- 형과 보안처분의 집행 분야는 법무·검찰행정의 영역으로 다루어 온 것이 우리나라 형사사법체제이고, 그 일환으로 법무부에 가석방심사위원회, 사회보호위원회 등을 구성, 집행 관련 중요 사항을 심의하여 왔음
- 권력분립의 원칙상 법원은 형의 선고를 담당하고, 형의 집행은 별도의 집행기관이 맡아하는 것이 당연함

* 독일의 경우 법원에서 보안처분 집행관련 업무를 심사하나, 독일은 사실상 법원 외에 가석방 등 형집행 관련 업무를 비롯한 사법행정 영역을 전담하는 형집행법원(형집행부 : Strafvollstreckungskammer)이 별도로 설치되어 있고, 동 법원에서 보안처분의 집행과 관련된 업무도 심사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집행 관련 형사법 체계가 전혀 다른 독일의 경우와 우리나라의 경우를 단순 비교할 수는 없음

- 12 -

9. 기타사항

- 법률안 제17조 제3항의 "청구기각의 결정"은 "청구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으로 수정함이 상당
- 법률안 제19조 제1항의 "형사소송법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는 현행 사회보호법 제20조 제7항처럼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상소할 수 있다"로 수정함이 상당
-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위촉은 고등검찰청 검사장이 하고(안 제37조 제2항), 해촉은 법무부장관이 하도록 (안 제39조 제1항) 한 것은 모순
- 이외에도 용어를 통일하고 자구와 표현을 다듬는 등의 많은 수정작업이 필요함

- 14 -

제251회 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제안설명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안설명서

2004. 12. 24

국회의원 노희찬

안녕하십니까 노희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사회보호법은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반하는 이중처벌 조항으로 대표적인 인권침해 법으로 이를 당장 폐지해야 합니다. 사회보호법은 쿠데타로 집권한 신군부의 사회 정화라는 미명아래 삼청교육을 실시했고, 그 실상을 감추기 위한 츄지로 만들어져 정당성이 결여된 법안이며, 더 이상 존치시키기 어려울 만큼 운명을 다한 법안입니다.

청송보호감호소에서도 이중처벌 폐지에 대한 제소자들의 6차례에 걸친 목숨건 단식과 현재소송, 사호보호법 폐지를 위한 시민사회 단체들의 노력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지난 16대 국회에서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민주당 의원 세분이 이미 폐지안을 제출한 바 있고, 올해 초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사회보호법 폐지와 치료감호 대체 입법안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이에따라 사호보호법을 폐지하고 이로 인해 규정이 삭제된 치료감호 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주 목적으로 하면서 그들의 사회복귀를 돋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합니다.

치료보호법은 과거의 정신장애자의 사회적 배제와 구금위주의 치료감호를 치료와 보호 위주로 개선한다는 취지입니다.

- 2 -

[주요 내용]

가. 치료보호 대상자의 정의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하고 있습니다.

나. 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합니다.

다. 전문가의 감정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합니다.

라. 보조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인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담당 생활교사 또는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보조인의 권리

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마. 치료보호시설의 수용기간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사. 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토록 했습니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바. 치료의 위탁

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치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식견을 갖춘 자 3인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두고자 합니다.

자. 의결 및 결정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토록 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심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개선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심신장애”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비정신병적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2. “치료보호대상자”라 함은 장기 7년 이상의 혐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에 상의 판결을 받을 자로서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계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3. “치료보호사건”이라 함은 제7조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4. “지정치료보호시설”이라 함은 피치료보호청구인 및 피치료보호자를 수용하여 치료·관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찰) ① 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찰은 공소제기할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찰에 따른다.

② 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찰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치료보호대상자(이하 “피치료보호청구인”라 한다)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공소제기할 사건의 관찰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찰에 따른다.

제4조(이송) ① 법원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찰에 속하는 치료보호사건을 다른 관찰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이 그 관찰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찰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 3 -

제5조(관찰의 병합) 법원은 동일한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개의 치료보호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용) 바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의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는 병동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장 치료보호사건의 절차 등

제7조(치료보호) 법원은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①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찰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③ 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을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제10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보호영장) ① 검사는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찰 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2.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3.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 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찰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관찰 지방법원 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속 등) ① 치료보호영장이 발부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즉시 관찰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④ 치료보호의 혐을 범파하는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지 아니한다.

제16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치료보호의 판결 등) ①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보호사건의 판결은 그와 동시에 공소제기된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형사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 각호 및 제328조 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판결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전문가의 감정 등) ① 법원은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판결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판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판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病狀)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항소 등) ① 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사(이하 ‘법정대리인 등’이라 한다)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항소할 수 있다.

② 형사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판결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판결의 효력)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인) ①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등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③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정신장애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법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22조(보조인의 규정) ①보조인은 치료보호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전술할 수 있다.
②보조인은 제30조 제1항의 가족로 등의 상사·결정상의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심문서 동석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위하여 전술할 수 있다.

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

제23조(치료보호의 내용) ①치료보호의 판결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24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제22조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법무부장관이 지정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운영·치료·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 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5조(지정의 사퇴) ①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법무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6조(지정의 취소) 법무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고 판단되거나 제2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27조(집행지침)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판결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8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여 전역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제29조(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여야 하는 안된다.

제30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한 혐의가 있는 때 또는 현체제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은 치료보호 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1조(가중료등의 심사·결정) ①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찰 결과로 인한 치료보호상의 위험회피(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중료 또는 치료보호상의 위험을 심사·결정한다.

제32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호지를 실무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마다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기종료 또는 제3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폐치료

치료자에 대하여 가중료 또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제32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개시 후 매 6월마다 종료 또는 가중료 여부를 심사·결정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청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와의 법정대리인 등으로부터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치료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만, 당해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등이 이를 부담할 능력이 있는 경우에 법정대리인 등이 국가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보조신청과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절차, 심사의 기준 및 경비보조내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치료보호에 관한법률안
(장애인권익문제연구소)

제안이유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현법 제13조 제1항의 일사부재리원칙에 반하고, 그 집행실제 있어서도 인권침해적 요소가 많아 이를 폐지하고,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해 규정이 삭제된 치료감호대상자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한 것임.

주요골자

-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 제3호).
- 치료보호시설에서의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보호대상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3호)
-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 외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를 분리수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법원은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치료보호대상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 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음(안 제7조).
- 검사는 피의자가 정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함(안 제8조).
-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관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함(안 제17조).
-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19조).
- 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판사가 지정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함(안 제22조 제1항).
-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보호결정을 내린 법원이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함(안 제22조 제2항)

10.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함.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 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6조).
11. 보호결정을 내린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하고, 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후 매 6월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0조 제1항 및 제2항).
12.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및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보호관찰이 개시됨(안 제32조 제1항).
13.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됨(안 제33조 제1항).
14.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6조 제1항 및 제2항).
15.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45조).

법률 제 호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정신장애 상태에서 범죄행위를 한 자 또는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자에 대하여 적절한 치료와 처우를 위한 필요한 절차 등을 규정함으로써 그의 개선과 범죄의 재발을 방지하여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청의는 다음과 같다.

1. “정신장애”라 함은 정신병(기질적 정신병을 포함한다)·인격장애·알코올 및 약물중독 기타 중한 정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를 말한다.
2. “보호자”라 함은 정신보건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보호의무자를 말한다.
3. “치료보호대상자”라 함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정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확정판결 또는 동법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서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자를 말한다.
4. “치료보호사건”이라 함은 제7제1항 및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과 관련된 사건을 말한다.
5. “지정치료보호시설(指定治療保護施設)”이라 함은 피치료보호청구인 및 피치료보호자를 수용하여 치료·관찰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관할) ① 치료보호사건의 토지관할은 처우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② 치료보호사건의 제1심 재판관할은 지방법원합의부 및 지방법원지원 합의부로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치료보호대상자(이하 “피치료보호청구인”이라 한다)에 대한 치료보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이 다른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관할에 따른다.

제4조(이송) ① 법원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적절한 처우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관할에 속하는 치료보호사건을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②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으로 관할 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제5조(관할의 병합) 법원은 동일한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하여 수 개의 치료보호사건이 관련된 때에는 병합하여 심리하여야 한다.

제6조(분리수용)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의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는 병동을 분리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제2장 치료보호사건의 절차 등

제7조(치료보호) 법원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청구가 있거나,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가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어 그의 정신장애상태를 치료하고 사회복귀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직권으로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8조(검사의 치료보호의 청구) ①검사는 피의자가 정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지방법원에 공소제기와 동시에 치료보호를 청구할 수 있다.

②검사는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청구함에 있어서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한다.

③법원은 공소제기된 사건의 심리결과 치료보호에 처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권으로 공소가 제기된 당해 사건을 치료보호사건으로 심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제9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결정으로 그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제9조(조사) 수사기관은 범죄를 수사함에 있어서 피의자의 정신장애상태를 참작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그에 필요한 자료를 조사하여야 한다.

제10조(치료보호영장) ①검사는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관할지방법원 판사에게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그를 보호구속(보호구금과 보호구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다만, 현재 정신보건법에 의해 보호 또는 치료를 받고 있는 경우는 그러지 아니한다.

1. 그의 정신장애의 상태에 비추어 다시 같은 유형의 범죄를 저지를 우려가 있다는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
2. 일정한 주거가 없는 때
3.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때
4.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②사법경찰관은 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검사에게 신청하여 검사의 청구로 관할지방법원 판사의 치료보호영장을 발부받아 보호대상자를 보호구속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 본문 단서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관한 지방법원판사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영장을 발부하는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제11조(보호구속 등) ①치료보호영장이 발부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즉시 관할 법원에서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보호구속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은 각각 10일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한 조사 또는 심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판사는 검사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1회에 한하여 결정으로 10일의 범위 내에서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제9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구속에는 형사소송법 제201조제2항 내지 제4항·제202조 내지 제205조 및 제20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해 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그 보호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법 중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에 의하여 체포 또는 구속된 피의자”는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으로, “체포 또는 구속”을 “보호구속”으로 각각 본다.

⑤보호구속된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94조 및 제9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2조(치료보호의 독립청구) 검사는 피의자가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해당되어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처분을 한 때에는 공소를 제기함이 없이 치료보호청구만을 할 수 있다.

제13조(치료보호청구와 구속영장의 효력 등) ①구속영장에 의하여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결정을 하고 치료보호청구만을 하는 때에는 구속영장은 치료보호영장으로 보며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②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를 청구한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즉각 가장 가까운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이송하여야 한다.

제14조(피치료보호청구인의 불출석) 피치료보호청구인이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로 공판기일에의 출석이 명백히 불가능한 경우에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의 출석없이 개정할 수 있다.

제15조(공판절차의 이행) ①법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사건의 공판개시 후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하여 형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가 아니라라는 명백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는 결정으로 형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한 공판절차로 이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를 청구한 때에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보고, 치료보호청구서는 공소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공판절차이행전의 심리는 공판절차에 의한 심리로 보고, 치료보호영장은 구속영장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의 경우 공소장에 기재할 사항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공판절차로 이행된 사건의 피고인이 치료보호영장에 의하여 보호구속된 경우에는 그 신병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로 이송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피고인의 이송을 법원사무관에게 명하거나 당해 관할구역의 검사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16조(공판내용의 고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로 이행하는 경우에 피고인의 출석없이 진행된 공판의 내용은 공판조서의 낭독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피고인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제17조(치료보호의 결정 등) ①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을 심리하여 그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치료보호처분을 하여야 하고, 그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결정으로써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②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은 피고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청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결정한 때에는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를 받아야 할 지정치료보호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④ 법원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각호, 제327조 각호 및 제328조제1항 각호(제2호 후단은 제외한다)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도 청구기각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 치료보호청구사건에 대하여 위와 같은 사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전문가의 감정 등) ① 법원은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할 때에는 지정 치료보호시설의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판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 의뢰받은 정신과 전문의 및 의견을 의뢰받은 정신보건 전문요원은 당해 감정서 또는 판찰의견서를 작성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병상(病狀)에 기초하여 치료보호의 필요성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제19조(항고 등) ① 검사 또는 피치료보호청구인,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변호인은 형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②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상소 및 상소의 포기·취하가 있는 때에는 치료보호사건의 결정에 대하여도 항고 및 항고 포기·취하가 있는 것으로 본다. 상소권회복 또는 재심의 청구나 비상상고가 있는 때에도 또한 같다.

제20조(결정의 효력)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제21조(보조인) ① 치료보호청구인의 보호자, 신뢰관계 있는 자, 변호사는 치료보호청구

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다.

② 법원은 피치료보호청구인에게 보조인이 없는 경우 그의 정신장애의 상태를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변호사를 보조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제3장 치료보호의 내용 및 지정치료보호시설

제22조(치료보호의 내용) ① 치료보호의 결정을 받은 자(이하 "피치료보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지정치료보호시설에 수용하여 치료를 위한 조치를 한다.

②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은 치료보호의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3년의 기간 내에서 보호 결정을 내린 법원이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 피치료보호자의 심신이 더 이상 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다고 판단하여 치료보호의 종료 또는 가종료(假終了)의 결정을 할 때까지로 한다.

제23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 ①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립·운영하는 국공립의료시설 또는 정신보건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정신요양시설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정신요양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그 시설의 장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지정치료보호시설에는 정신과 전문의 및 정신보건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정신보건 전문요원을 두어야 한다.

④ 국가는 지정치료보호시설에 대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보호시설의 기준, 운영, 치료,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보조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지정의 사퇴) ①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지정을 받은 정신요양시설이 그 지정을 사퇴하고자 할 때에는 사퇴일로부터 1년 전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퇴의사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사퇴의사를 통보받은 때에는 그 의사를 통보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지정을 철회하고 이를 당해 시설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5조(지정의 취소) 보건복지부장관은 그 지정치료보호시설이 이 법에 의한 치료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거나 제2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신과 의사 및 정신보건전문요원을 두지 않은 경우에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4장 치료보호처분의 집행

제26조(집행지휘) ①치료보호처분의 집행은 검사가 지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휘는 결정서등본을 첨부한 서면으로 한다.

제27조(집행순서 및 방법)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한다.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 제할 수 있다.

제28조(치료보호내용 등의 공개) 이 법에 의한 치료보호의 내용과 실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본인 또는 그의 보호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치료보호대상자의 개인신상에 관한 것은 공개하여서는 안 된다.

제29조(소환, 치료보호집행) ①검사는 보호구속되지 아니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를 집행하기 위하여 피치료보호자를 소환할 수 있다.

②피치료보호자가 소환에 응하지 아니한 때에는 검사는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경우에 피치료보호자가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때 또는 현재지를 알 수 없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치료보호집행장을 발부하여 보호구인할 수 있다.

④치료보호집행장은 치료보호영장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30조(가종료등의 심사·결정) ①보호결정을 내린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그 집행개시 후 매 6월마다 종료 또는 가종료 여부를 심사·결정한다.

②심의위원회는 가종료 또는 제3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치료위탁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가종료 또는 치료위탁 후 매 6월마다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한다.

제31조(치료의 위탁) ①심의위원회는 정신장애자등이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 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때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②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되어 형기상당의 치료보호를 집행받은 자에 대하여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보호자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의 위탁을 결정함에 있어서 피치료보호자의 보호자로부터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입원·치료를 보증하는 뜻의 서약서를 제출받아야 한다.

④치료의 위탁에 필요한 비용은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부담한다. 다만, 당해 피치료보호자 또는 그의 보호자가 이를 부담할 능력이 없을 때에는 보호자가 국가에게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국가의 비용보조신청과 심사는 심의위원회가 담당하고 그 절차, 심사의 기준 및 경비보조내역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호관찰

제32조(보호관찰)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 보호관찰이 개시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보호가 가종료된 때

2.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시설 외에서 치료받

기 위하여 보호자에게 위탁된 때

② 보호관찰의 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보호결정을 내린 법원이 계속 보호관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그 결정으로 보호관찰기간을 1차에 한하여 2년간 연장할 수 있다.

③ 보호관찰기간의 만료전이라도 심의위원회의 치료보호의 종료결정이 있는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④ 보호관찰이 개시된 자(이하 “피보호관찰자”라 한다)가 다시 치료보호의 집행을 받게 되어 재수용된 때에는 보호관찰이 종료된다.

제33조(치료보호의 집행면제 등) ① 보호관찰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피보호관찰자에 대하여 치료보호가 종료된다.

②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의 관찰성적 및 치료경과가 양호한 때에는 치료보호의 종료를 결정할 수 있다.

제34조(가종료 취소와 치료보호의 재집행) 심의위원회는 피보호관찰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결정으로 가종료 또는 치료의 위탁을 취소하고 다시 치료보호를 집행할 것을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1. 제34조의 준수사항 기타 보호관찰에 관한 지시·감독에 위반한 때

2.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관찰을 받고 있는 피보호관찰자가 증상이 악화되어 치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보호관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제6장 치료보호심의위원회

제36조(치료보호심의위원회) ①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법무부에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둔다.

② 심의위원회는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5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법무부장관이 위촉한다.

③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법무부차관이 된다.

④ 심의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치료의 위탁·가종료 및 그 취소와 치료보호종료여부에 관한

사항

2. 피보호관찰자에 대한 준수사항의 부과 및 지시·감독과 그 위반시의 제재에 관한 사항

3. 제31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치료위탁경비보조신청에 관한 심사 및 결정

4. 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관련된 사항

⑤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서무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7조(결격사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심의위원이 될 수 없다.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2.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의위원에서 해촉된 후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이 법, 의료법, 약사법, 정신보건법 또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제38조(심의위원의 해촉) ① 법무부장관은 심의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심의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정신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

2. 직무태만·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심의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제39조(심사) ① 심의위원회는 심사자료에 의하여 제39조제4항에 규정된 사항을 심사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법무부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결정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거나 피보호자(피치료보호자 및 피보호관찰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기타 관계자를 직접 소환·심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의 명을 받은 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권한을 가진다.

1.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의 소환·심문 및 환경조사

2.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에의 조회 및 관계자료의 제출요구

④ 피보호자 기타 관계자는 조사공무원의 소환·심문 및 조사에 응하여야 하며, 국·공립기관 기타 공공단체·민간단체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회나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국가기밀 또는 공공의 안녕질서에 유해한 것이 아니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제40조(의결 및 결정) ①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을 함에 있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으로 하여금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하여 이를 참조하여야 한다.

③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 또는 보호관찰소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기 전에 피치료보호자의 담당 의사 또는 보호관찰관으로 하여금 피치료보호자의 상태 및 예후 그리고 치료보호종료의 타당성 여부에 관해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

제41조(심의위원회의 기피)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또는 보조인은 심의위원회에게 심사·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장은 당사자의 기피신청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다만, 위원장이 결정하기에 상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의결로 결정할 수 있다.

제42조(피치료보호자 등의 심사신청) ①피치료보호자와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피치료보호자가 치료보호의 필요가 없을 정도로 치유되었음을 이유로 심의위원회에 치료보호의 종료여부를 심사·결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심의위원회에 심사신청서 및 심사신청이 유예 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심의위원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에 대하여 의견서를 첨부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은 치료보호의 집행이 개시된 날부터 6월이 경과한 후에 하여야 한다. 신청이 기각된 경우에는 6월이 경과한 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제7장 피치료보호자의 수용 및 감독

제43조(지정치료보호시설의 의무)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피치료보호자의 치료와 보호 및 관찰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44조(행동제한 등)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은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을 받은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치료 및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범위 내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피치료보호자의 행동을 제한할 수 있다. 다만, 피치료보호자의 전화통화 및 서신수발, 보호자 및 보조인과의 면담은 원칙적으로 제한할 수 있으나 담당 정신과 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횟수를 제한 할 수 있다.

제45조(처우개선의 청원) ①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보건복지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제기, 청원의 심사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해서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46조(운영실태 등 점검 및 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매 3월마다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운영실태 및 피치료보호자에 대한 처우상태를 점검하여야 한다.

제47조(개선명령)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원의 검토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정치료보호시설의 장에게 그에 상응한 조치를 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8장 보칙

제48조(치료보호청구의 시효) ①치료보호청구의 시효는 치료보호청구된 사건과 동시에 심리하거나 심리할 수 있었던 죄에 대한 공소시효기간의 경과로 완성된다.

②치료보호청구된 사건은 결정의 확정이 없이 치료보호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15년을 경과하면 청구의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본다.

제49조(치료보호의 시효) ①피치료보호자는 그 결정이 확정된 후 집행을 받음이 없이 10년을 경과하면 시효가 완성되어 그 집행이 면제된다.

②시효는 치료보호의 가중료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은 진행되지 아니한다.

③시효는 피치료보호자를 체포함으로써 중단된다.

제50조(군법 피적용자에 대한 특칙) ①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서는 군사법원은 법원, 군검찰부검찰관은 검사, 군사법경찰관리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각각 행한다.

②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치료보호처분의 관리와 그 집행사항을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군치료보호위원회를 둔다.

③군치료보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보호위원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군사법원, 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치료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이 명백한 때에는 당해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 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⑤법원·검사 또는 보호위원회는 치료보호대상자가 군사법원법 제2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임이 명백한 때에는 치료보호처분사건을 대응하는 군사법원·군검찰부검찰관 또는 군보호위원회에 이송한다. 이 경우 이송전에 한 조사·청구·재판·신청·심사 및 결정은 이송 후에도 그 효력에 영향이 없다.

제51조(다른 법률의 준용) 치료보호처분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형사소송법 및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장 벌칙

제52조(허위진단서작성등) 치료보호처분사건에 관하여 형법 제154조·제233조 또는 제

234조(허위작성진단서의 행사에 한한다)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

IN

고에 처한다. 이 경우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폐지법률) 사회보호법은 이를 폐지한다.

제3조(치료감호처분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사회보호법에 의하여 치료감호처분을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치료보호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4조(치료감호시설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상의 치료감호시설과 그 소속 공무원은 이 법에 의한 지정치료보호시설과 그 소속공무원으로 본다.

제5조(군사회보호위원회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사회보호법 제4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치된 군사회보호위원회는 이 법 제5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 설

치된 군치료보호위원회로 본다.

치료보호에 관한 법률안 검토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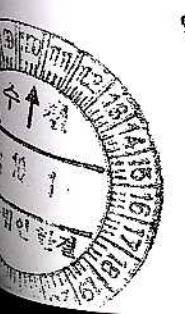
□ 법률 개요

1. 제안 이유

- 현행 사회보호법에 의한 보호감호처분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고, 그 집행에 있어서도 인권침해 논란 있음
- 사회보호법 자체도 1980년 국가보위법회의에서 제정된 것으로 절차상 정당성이 문제될 뿐만 아니라 위험한 전과자의 격리·사회방위를 우선하여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이를 폐지함
- 사회보호법의 폐지로 인하여 규정이 삭제된 치료감호자에 대하여 보호와 치료를 함으로써 그들의 사회복귀를 돋기 위한 것임

2. 제정안의 주요내용

- 가. 장기 7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범죄행위를 하였으나 심신장애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처분을 받거나 형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죄의 판결 또는 동별 등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감경되어 집행유예 이상의 판결을 받은 자를 치료보호대상자로 함(안 제2조 제2호)
- 나. 치료보호시설에서의 치료 필요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치료보호대상의 요건으로 명시함(안 제2조 제2호)
- 다. 마약류·알코올 기타 약물중독에 의한 치료보호대상자와 그 외 사유로 인한 치료보호대상자를 분리수용하도록 함(안 제6조)



- 라. 검사는 피의자가 심신장애로 치료보호를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어 치료보호를 청구하는 경우에 정신과 전문의의 진단 또는 감정이 있어야 함(안 제8조)
- 마. 치료보호영장의 요건을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의 요건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피치료보호청구인에 대해서도 보석이 가능하도록 함(안 제10조)
- 바. 법원은 치료보호사건에 대한 결정을 할 때에는 정신과 전문의의 감정과 정신보건법 제7조의 정신보건전문요원의 판찰의견을 참조하여야 함(안 제18조)
- 사. 치료보호처분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결정에 관계된 범죄행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음(안 제20조)
- 아. 피치료보호청구인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및 변호인은 치료보호청구사건의 보조인이 될 수 있음. 피치료보호청구인이 정신보건법에 의한 정신요양시설 또는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생활시설에서 생활하고 있거나 생활하였던 경우에 담당 생활교사 또는 그 시설의 담당자는 보조인이 될 수 있음(안 제21조 제1항 및 제2항)
- 자. 보조인은 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수사 및 법원의 심리에 등석하여 피치료보호청구인을 위하여 진술할 수 있음(안 제22조)
- 차. 치료보호시설에의 수용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음(안 제23조 제2항)
- 카. 치료보호와 형이 병과된 경우에는 치료보호를 먼저 집행함. 이 경우 치료보호의 집행기간은 형기에 산입하되 잔여 형기의 집행을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음(안 제28조)
- 타. 피치료보호자가 수용된 지정치료보호시설의 관할 법원은 심의위원회의 의견을 듣고 피치료보호자를 심문하여 그 집행개시후 매 6월 종료 또는 가중로 여부를 심사·결정함(안 제31조 제1항)

- 파. 심의위원회는 치료보호만을 선고받고 치료보호시설에 수용된 후 1년을 경과한 피치료보호자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법정대리인 등에게 지정치료보호시설 외에서의 치료를 위탁할 수 있음(안 제32조)
- 하. 치료보호처분 및 보호관찰의 관리와 집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 고등검찰청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과 정신과 전문의의 자격이 있는 3인의 위원 및 치료보호에 관하여 전문적인 의견을 갖춘 자 3인으로 구성된 치료보호심의위원회를 둠(안 제37조 제1항 및 제2항)
- 거. 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함(안 제41조 제1항)
- 너. 피치료보호자, 그의 보호자 및 보조인은 법무부령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피치료보호자의 처우개선에 관한 청원을 할 수 있음(안 제46조)

□ 검토 의견

1. 법률의 명칭

○ 법률안

제명을 "치료보호에관한법률", 수용시설을 "지정치료보호시설", 심의기구를 "치료보호심의위원회"로 규정함

○ 의견

"치료보호"라는 용어 사용 재검토 필요